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문

Ⅰ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일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1) 공제요건

①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관계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
본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배우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본인·배우자의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주거형편상 별거자 포함)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1.1.1 이후 출생)	제한 없음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일시퇴거자 포함)	
	수급자	제한 없음		
	위탁아동	만 20세 이하 ^{주)}		

주)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소득법50①3마, 소득령106⑨).

가제시 유의사항 - 기본공제

- 1) 직계비속(아들, 딸 등)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범위에 해당하며, 소득·세액공제신고서상 관계코드는 "5"번으로 기재
- 2) 연령요건 : 장애인은 연령요건을 불문하며, 연령의 판단은 '만'으로 판단
- 3)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는 생계요건 불문
- 4) 일시퇴거 사유 :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 5)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판단은 모든 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하여 판단
- 6)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 시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 요망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예시

- ① 1차 이하의 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와 고가주택은 제외)의 임대소득, 작물재배소득(농사)
- ②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금액의 대소와 무관하게 소득요건 충족)
 - (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무조건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무조건 분리과세), 750만원 이하의 강의료(선택적 분리과세), 1,2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선택적 분리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 ③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④ 2001.12.31 이전 불입을 기초로 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수령액(과세제외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판단 요령

- ①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산소득누계액, 총기여금, 불입월수 등을 알아야 하므로, 연금소득에 관하여는 해당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기 바람
- ②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은 2020년 귀속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정할 수 있음
 - * 2020년 소득금액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
- ③ 퇴직금(세금 차감 전)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 미충족

②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별 해당 칸에 “○”표 (단, 장애인 공제란에는 해당 코드를 기재※)

구분	추가공제요건		추가공제금액
	1차 요건	2차 요건	
경로우대자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만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불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자, 고엽제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41,470,589원) 이하인 여성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연 50만원
한부모소득공제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자	연 100만원

가재시 유의사항 - 추가공제

- 1) 근로자 본인이 기혼여성인 경우 남편의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부녀자공제 가능
- 2)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치유가 되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장애인증명서 제출 요망
- 3) 연도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까지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신청 할 수 있으므로 한부모소득공제는 불가능

2) 제출서류

구분	준비서류	발급처
기본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
별거자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
일시퇴거자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재학·요양·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원천징수의무자(본인 작성) 재학·요양·재직증명서 : 해당 기관
입양자	입양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대체가능)	입양기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담당자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정부24(www.gov.kr), 읍·면·동 주민센터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번호가 기재된 여권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공관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상이증명서 사본	정부24(www.gov.kr), 읍·면·동주민센터, 의료기관, 국가보훈처(상이증명서)

(2)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 ①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
- ②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포함(보험료 기타 자료란에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기재
- ③ 자료구분

구분	증빙서류
국세청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명세
기타 자료	위의 증빙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빙서류 ^{주)}

주) 보험료 기타자료란에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해당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연금보험료공제

(1) 공제요건

구분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비고
국민연금	근로자 본인	근로자부담금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현)근무지 연금보험료의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가 기제하지 않을 수 있음 중(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중(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연금보험료공제'란의 금액 기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근로자 본인	근로자부담금 전액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주(현)근무지만 있는 경우 필요 없음	원천징수의무자 보관
	중(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기재시 유의사항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지역가입자 부담금 포함)에 대하여 공제가능함
- 중(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중(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연금보험료공제'란의 금액이 없을 때 중(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1쪽 좌측 하단란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등 기재금액을 기재

③ 특별소득공제

(1) 보험료공제

1) 공제요건

구분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금액	비고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본인 부담금	근로자부담금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현)근무지 건강보험료 등의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가 기제하지 않을 수 있음 중(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중(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③보험료 ㉞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㉟고용보험료'란의 금액 기제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주(현)근무지만 있는 경우 필요 없음	원천징수의무자 보관
	중(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가제시 유의사항 - 보험료공제

- 1) 2020년 귀속분 건강보험료 등의 연말정산을 통해 2021년 4월에 정산차액을 납부한 경우 정산한 "2021"에 공제 반영함
- 2)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해당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㉓보험료 ㉔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㉕고용보험료'란의 금액이 없을 때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1쪽 좌측 하단란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기재금액을 기재
- 3)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

(2) 주택자금공제 개정

1) 공제요건

① 주택임차차입금(본인 명의) : 대출기관 차입, 거주자 차입으로 구분하여 원리금상환액을 각각 기재

구분	대출기관 차입	거주자간 차입
공제대상자	①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원 ^{주1)})인 근로자 또는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세입자 ③ 총급여액 : 제한 없음 ④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 : 제한 없음	①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원 ^{주1)})인 근로자 또는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 ②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세입자 ③ 총급여액 : 5천만 원 이하 ④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 : 제한 없음
공제요건	2007.12.31 이전 차입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것 공제 불가
	2008.1.1 이후 차입	공제 불가
	2010.1.1 이후 차입	①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할 것 ② 입주일·전입일 ^{주2)}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주3)} ③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④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할 것 ⑤ 입주일·전입일 ^{주2)}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할 것 ^{주3)} ⑥ 무이자부 또는 1.2% ^{주4)} 미만의 차입금이 아닐 것
공제금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연 300만원	

주1)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것이 없어야 함.

주2)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전입일로 봄(소득령112④).

주3) 2014.2.21. 이후 지급분부터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새로 차입하는 경우 계약연장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세에서 다른 전세로 이사하면서 종전의 차입을 유지하는 경우 종전 입주일·전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주4) 2021.3.16.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함. 경과규정에 따라 2020.3.13.~2021.3.15. 차입분은 1.8% (소득칙 제781호 부칙8조), 2019.3.20.~2020.3.12. 차입분은 2.1%(소득칙 제731호 부칙3조), 2018.3.21.~2019.3.19. 차입분은 1.8%(소득칙 제670호 부칙4조) 2017.3.10.~2018.3.20. 차입분은 1.6%(소득칙 제604호 부칙1조), 2016.3.16~2017.3.9 차입분은 1.8%(소득칙 제556호 부칙6조), 2015.3.13.~2016.3.15. 차입분은 2.5%(소득칙 제479호 부칙3조), 2014.3.14.~2015.3.12. 차입분은 2.9%(소득칙 제407호 부칙6조), 2013.2.23.~2014.3.13. 차입분은 3.4%(소득칙 제323호 부칙3조), 2012.2.28.~2013.2.22. 차입분은 4.0%(소득칙 제265호 부칙3조), 2012. 2.27. 이전 차입분은 3.7%(소득칙 제195호 부칙3조)를 적용한다.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본인 명의) : 상환기간(15년 미만, 15년(10년) 이상, 30년 이상)에 따라 구분하여 이자상환액을 각각 기재

구분			공제대상 차입금의 범위	공제금액	공제한도
차입시기	공제대상자	요건			
2005.12.31 이전 차입	연말 현재 세대주(원 ^{주1)})인 근로자(외국 인 포함 ^{주2)})	① 주택수 요건 : 없음 ② 주택규모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③ 주택가격 요건 : 없음	① 상환기간 15년 (10년) 이상 ※ 2003.12.31 이전 차입분 : 10년 이상 ②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일 것 ③ 근로자 본인 =채무자(차입자) =주택소유자	이자 상환액 전액	① 2011년 이전 - 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② 2012년 이후 (상환기간 15년 ^{주3)} 이 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 식분할방식 차입분 ^{주4)} : 연 1,500만원 - 기타 : 연 500만원
2006.1.1 이후 차입		① 주택수 요건 : 1주택 ② 주택규모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③ 주택가격 요건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4.1.1 이후 차입		① 주택수 요건 : 1주택 ② 주택규모 요건 : 제한 없음 ③ 주택가격 요건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1.1 이후 차입		① 주택수 요건 : 1주택 ② 주택규모 요건 : 제한 없음 ③ 주택가격 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1)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것이 없어야 하며,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주2)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및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것이 없어야 하며, 본인이 해당주택에 실제거주하여야 함 (2021.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3) 2015년 이후 차입분 중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방식 차입금의 경우 연 300만원 한도.

주4) 2015년 이후 차입분 중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분할방식 차입금의 경우 연 1,800만원 한도.

2) 제출서류

구분	입증대상	구비서류	발급기관
공통사항	세대주여부 판단	주민등록표등본	구청, 읍·면·동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24(www.gov.kr)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간소화 홈페이지
	거주자간 차입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상환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 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대주(貸主)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 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
이사연장갱신의 경우	이사연장 전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주택 임대인	

구분	입증대상		구비서류	발급기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간소화 홈페이지
	소유주택에 관한 사항	면적 등 확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주택의 가액 등 확인	분양계약서	분양회사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or.kr)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해당 시·군·구청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의 서류(분양계약 서 등)	분양회사 등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자가 건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 승인서 포함) 사본	해당 시·군·구청
주택건설사업자 건설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 납부사실입증서류,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자체 보관, 주택건설사업자	
	대환차환만기연장의 경우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해당 금융기관

가재시 유의사항 - 주택자금공제

1) 공통사항

- ①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의 지출액 또는 상환액에 한하여 공제가능
- ② 연말 현재 세대주(원)이어야 함(단,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가능)
단,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가능.
- ③ 주택 수 판단 :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여 세대기준으로 주택 수 산정
※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④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1세대당 85㎡(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이하
- ⑤ 기준시가의 적용 : 기준일이 아닌 공시일을 기준 적용(공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그 직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원)' 여부는 연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 중 무주택자이었다가 주택 1채 이상을 소유하여 연말 현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공제불가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① 연말 현재 세대원 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공제가능
- ② 2005.12.31 이전 차입분의 경우 2주택 이상의 자도 공제가능함
※ 단, 2005.12.31 이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공제를 받는 거주자가 2006.1.1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연말 현재 2주택 이상의 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제불가함
- ③ 차입금 이전, 전환 또는 만기연장의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상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또는 10년) 이상을 산정함
- ④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한 경우에는 공제불가하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차입금을 15년 경과 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부양가족명의로의 차입금
- ② 연말현재 세대원인 경우에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경우
- ③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및 가족이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경우
- ④ 연중에는 무주택자이었다가 연말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⑤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⑥ 미상환액
- ⑦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상환한 금액
- ⑧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본인 이외의 자가 채무자인 경우
- ② 세대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③ 연말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
- ④ 상환기간이 15년(2003.12.31 이전 차입분의 경우 10년, 2015.1.1. 이후 차입분 중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방식 차입금인 경우 10년 이상도 가능) 이상이 아닌 것.
- ⑤ 등기일로부터 3월내 차입분이 아닌 것
- ⑥ 연체이자(선납이자는 공제가능)

4 그 밖의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공제

1) 공제요건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저축		공제금액	공제한도
	가입시기	공제대상 저축명		
근로자 본인	2000.12.31 이전 가입	개인연금저축	저축납입액(분기별 300만원 한도)의 40%	연 72만원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간소화자료	해당저축기관 또는 국세청 간소화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가제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공제

- 1) 근로자 본인 납입액만 공제가능함
- 2) 연금저축에 대한 공제가 연금계좌공제로 구분됨에 따라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공제만을 말하는 것임

◆ 연금저축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해당연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 전까지 불입액
- ② 미납액
- ③ 타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2) 주택마련저축공제

1) 공제요건(본인 명의)

공제대상저축의 범위	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공제금액	공제한도
	가입시기	세대주, 소유 주택수 요건		
① 청약저축(연 240만원 한도)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240만원 한도) ③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 (월 15만원 한도)	2005.12.31 이전 가입	① 연말 현재 세대주 ② 주택 수 요건 : 연중 무주택 또는 1주택 ③ 주택규모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④ 주택가격 요건 : 없음 ⑤ 총급여액 요건 : 7천만원 이하	저축납입액 의 40%	연 300만원
	2006.1.1 이후 가입	① 연말 현재 세대주 ② 주택 수 요건 : 연중 무주택 또는 1주택 ③ 주택규모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④ 주택가격 요건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⑤ 총급여액 요건 : 7천만원 이하 ※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중 무주택자 만 공제가능하며, 주택규모, 주택가격 요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2010.1.1 이후 가입	① 연말 현재 세대주 ② 주택 수 요건 : 연중 무주택 ③ 총급여액 요건 : 7천만원 이하 ※ 단, 2010.1.1 이후 가입한 근로자주택 마련저축은 공제불가		

주) 2009.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총급여액 요건(7천만원 이하)을 고려하지 않음. (2010.1.1. 이후 가입자는 공제불가)

2)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발급처
세대주 여부 판단	주민등록표등본	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민원24(www.minwon.go.kr)
저축납입액 증명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간소화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공제신청 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

기재시 유의사항 - 주택마련저축공제

- 1)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의 저축납입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연말 현재 세대주이어야 함
- 2) 주택 수 판단 :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여 주택 수 산정. (주의 : 연중 소유 주택수를 고려)
 - ※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3)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1세대당 85㎡(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이하
- 4) 기준시가의 적용 : 기준일이 아닌 공시일을 기준 적용(공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그 직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 5) 2005.12.31 이전 가입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초과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함
 - ※ 2005.12.31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근로자가 2006.1.1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연 중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함
- 6) 연 중 중도해지 시 해지 전 납입금액 공제불가(단, 만기 또는 주택 당첨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제외)

◆ 주택마련저축공제 불가능한 경우의 예시

- ①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②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
- ③ 연중에 세대주이었다가 연말현재는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 ④ 2006.1.1. 이후부터 2009.12.31. 이전 가입한 1주택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⑤ 2009.12.31. 이전 가입자가 연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⑥ 2010.1.1. 이후 가입자가 연중 1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 ⑦ 청약부금·청약예금
- ⑧ 미납액 또는 선납액
- ⑨ 2010.1.1 이후 가입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⑩ 2009.12.31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의 가입자로서 연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⑪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해당 저축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3) 투자조합출자공제

공제대상자	공제요건	공제금액	제출서류
근로자 본인	① 출자 등 대상기관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간접투자(개인투자조합)·직접투자,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후 7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우수기업 등의 지분증권 ② 출자 등 방법 설립 시 출자, 유상증자 참여 등 실질적인 투자에 한함	Min(①, ②) ① 출자 등 금액×10%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 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 ② 근로소득금액×50%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원천징수의무자 발급), 출자·투자확인서(투자조합관리자등 발급)

기재시 유의사항 - 투자조합출자공제

- 1) 근로자 본인 출자 금액만 공제가능
- 2) 출자 등 방법 : 타인의 출자지분 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투자)하는 경우 공제불가
- 3) 공제반영시기
 - ①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② 2회 이상 투자한 경우 : 각 투자분 마다 공제연도를 선택 가능하나, 1회 투자를 분할하여 여러 연도에 나누어 공제받을 수는 없다.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개정

1) 공제요건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범위 및 공제율	공제금액
① 근로자 본인 ②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③ 기본공제대상(연령 불문) 직계비속입양자 ④ 기본공제대상(연령 불문) 직계존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단, ㉠+㉡+㉢+㉣+㉤의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함) ㉠ 전통시장 사용분(40%) ㉡ 대중교통 이용분(4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30%) ㉣ 직불카드 등 사용분(제로페이 포함)(30%) ㉤ 신용카드 사용분(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액의 범위에서 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최저사용금액 초과액은 소득공제율이 높은 사용액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①,② 중 적은 금액 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초과사용금액×공제율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1.05)×10% ② 한도액 : ㉠+㉤ ㉠ 기본한도: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주)} ㉡ 추가한도: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Min[기본한도초과액,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 100만원] + Min[기본한도초과액 - 전통시장사용분공제액, 대중교통이용분×공제율, 100만원] + Min[기본한도초과액 - 전통시장사용분공제액 - 대중교통이용분공제액, 도서공연등사용분×공제율, 100만원] + Min[기본한도초과액 - 전통시장사용분공제액 - 대중교통이용분공제액 - 도서공연등사용분공제액, 전년대비소비증가분공제액, 100만원] (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경우 : Min[기본한도초과액, 전통시장사용분×공제율, 100만원] + Min[기본한도초과액 - 전통시장사용분공제액, 대중교통이용분×공제율, 100만원] + Min[기본한도초과액 - 전통시장사용분공제액 - 대중교통이용분공제액, 전년대비소비증가분공제액, 100만원]

주) 소득수준별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Min(총급여액의 20%,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원천징수의무자
첨부서류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해당 신용카드사(신용카드업자) 등 또는 국세청 간소화홈페이지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서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또는 국세청 간소화홈페이지
	대중교통 이용분 대중교통 이용내역,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	해당 신용카드사(신용카드업자) 등, 교통카드사 또는 국세청 간소화홈페이지
	도서신문 공연박물관 미술관사용분 도서구입·공연관람 사용내역, 박물관미술관 입장 증빙자료	해당 신용카드사(신용카드업자) 등, 해당 박물관미술관 또는 국세청 간소화홈페이지

가재시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1) 신용카드공제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배우자 등의 연령요건을 묻지 아니함
 (예) 소득이 없는 만 21세 대학생인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근로자인 아버지가 소득공제 가능함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② 맞벌이부부 중 상대방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③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처리된 금액
- ④ 타인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
- ⑤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임사전·퇴사후 지출액)

(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공제대상자	공제요건	공제금액	제출서류
근로자 본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Min(①, ②) ① 납입액×40% ② 연 240만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 자녀세액공제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제출서류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명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연 30만원+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인적공제시 제출된 서류로 확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5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기재시 유의사항 - 자녀세액공제

- 1) 자녀장려금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2)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손자·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3) 2021년 연말정산 기준 만 7세이상: 2014.12.31. 이전 출생자

(2) 연금계좌세액공제

1) 공제요건

구분	공제 대상자	연령	세액공제금액	비고
연금계좌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50세 이상 (1971.12.31. 이전 출생)	$[\text{Min}(\text{①}, \text{②}) + \text{③}] \times 12\% (15\% \text{주1})$ ① 퇴직연금 근로자납입액 + $\text{Min}\{\text{연금저축 납입액}, 600\text{만원}(300\text{만원} \text{주2})\}$ ② 900만원(700만원 ^{주2}) ③ $\text{Min}(\text{ISA계좌만기시 연금계좌추가납입액} \times 10\%, 300\text{만원}) \text{주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추가 제출 요망
		50세 미만 (1972.1.1. 이후 출생)	$[\text{Min}(\text{①}, \text{②}) + \text{③}] \times 12\% (15\% \text{주1})$ ① 퇴직연금 근로자납입액 + $\text{Min}\{\text{연금저축 납입액}, 400\text{만원}(300\text{만원} \text{주2})\}$ ② 700만원 ③ $\text{Min}(\text{ISA계좌만기시 연금계좌추가납입액} \times 10\%, 300\text{만원})$	

주1)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주2) 총급여액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일 경우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연금계좌(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
	연금납입확인서	해당 연금사업자 및 저축기관 또는 간소화홈페이지

기재시 유의사항 - 연금제외

-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 부담금도 연금보험료공제의 적용대상임
- 2) 중도 해지시 당해연도 납입액 공제불가
- 3)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부 인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순납입액만 공제 가능

(3) 보장성보험료공제

1) 공제요건

구분	공제대상 보험료	한도액	공제율	비고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보험료의 합계액 기준 연 100만원	12%	•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 일반보험료 100만원 한도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연령 불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각종 공제, 주택 임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보험료의 합계액 기준 연 100만원	15%	• 보험계약기준으로 동일 보험 건에 대해 장애인전용보험료와 일반보험료는 중복 적용불가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거나,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해당 보험회사 또는 국세청 간소화홈페이지

기재시 유의사항 - 보험료공제

- 1)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기재
- 2)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불가

◆ 보험료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타인(맞벌이부부의 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 ② 맞벌이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 ③ 자동차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 ④ 외국의 보험기관에 납부하는 보험료
- ⑤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납부한 금액(입사전·퇴사후 지출액)

(4) 의료비공제

1) 공제요건

① 공제대상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지출액
- ②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구입비
- ③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④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기본공제대상자(연령·소득금액 제한 없음)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⑥ 보청기구입비
-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월 한도액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 ⑧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② 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액

공제대상자	세액공제금액	
	의료비지출액	적용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연령·소득 불문)	기본의료비 : 본인·65세이상 ^{주1)} 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주2)} 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기본의료비 전액 ...①
	추가의료비 : 상기외의 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Min(㉠, ㉡) ...② ㉠ 추가의료비-(총급여액×3%) ㉡ 연 700만원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해당 난임시술 의료비 전액 ...③
	의료비세액공제액 : (①+②)×15%+③×20% 의료비추가공제 적용대상금액(②)이 (-)금액인 경우에도 의료비기본공제금액(①)과 그대로 합산(①과 ②의 공제금액을 먼저 합산하고, 그 합산한 금액이 (-)금액인 경우 ③에서 그 금액을 차감)	

주1) 65세 이상(1956.12.31 이전 출생)

주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 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 특례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을 말한다.

2) 제출서류

① 의료비영수증

구분	발급처	제출서류명	비 고	
의료기관지출액, 의약품구입비	의료기관, 약국	입원 및 외래진료(한방제외)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의 의료비부담명세서 또는 국세청 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내역집계표 및 의료비상세내역
		한방병원·한방 외래진료	한방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약국, 한국회귀 의약품센터	약제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기타의 요양기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판매자 또는 임대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의료비영수증,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의료비영수증의 경우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안경사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판매자	영수증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국세청 간소화홈페이지의 소득공제내역집계표 및 의료비상세내역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	영수증	국세청 간소화홈페이지의 소득공제내역집계표 및 의료비상세내역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기관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보험회사 등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국세청 간소화홈페이지의 소득공제내역집계표 및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	

가제시 유의사항 - 의료비공제

- 1)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조건 중 관계조건(본인·배우자·부양가족) 및 생계조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
- 2)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제출
 - ①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의료비공제신청
 - ② 회사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시(2021년 귀속분은 2022.3.10까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전산 제출하여야 함

◆ 의료비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타인(맞벌이부부의 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 ②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 ③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
- ④ 외국의료기관에서 지출된 의료비
- ⑤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 ⑥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
- ⑦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⑧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 ⑨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⑩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입사전·퇴사후 지출액)

(5) 교육비공제

1) 공제요건

① 공제대상 교육비

- ①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육성회비, 기성회비 등)
- ②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 ③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
- ④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함)
- 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 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 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함)
- ⑦ 본인을 위해 지급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

② 공제대상자 등

분류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기관	공제한도액
본인에 대한 교육비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대학원생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인정한 교육과정 및 「도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 국외교육기관 •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한도 없음 (대학원생 포함)

분 류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기관	공제한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수강료에서 근로자 수강지원금 차감함)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기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과정 국외교육기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1주 1회 이상 실시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생: 공제불가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교: 1명당 연 300만원
장애인특수교육비(직계존속·수급자 공제 가능)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위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한도 없음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③ 공제금액

$$\text{교육비 세액공제금액} = \text{공제한도 내 지출금액} \times 15\%$$

④ 국외교육비

구분	공제대상자		
국외근무자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불문)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		
국내근무자	고등학생·대학생 ^{주1)}		
	초등학교 취학전아동, 초등·중학생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 ①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③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주2)}	

주1) 유학자격 요건 삭제(2012.02.02.)

주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학의 특례는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국내로 귀국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배우자와 자녀만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법규소득2011-0537, 2011.12.29).

2) 제출서류

①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구분	관련서류	발급기관	
국내교육기관	대학원 시간제과정 학위취득과정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및 체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교육비 납입증명서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청 간소화홈페이지 해당교육기관 학위취득과정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인터넷 발급가능)
	장애인특수교육기관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기관 입증서류	장애인특수교육기관
국외교육기관	대학원 대학교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영수증	국외교육기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1. 기본서류 : 상동 2. 추가서류 : 국내근무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중학생 이하의 자 등은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서류 : 국외교육기관 추가서류 : 국외유학자격인정서류 발급처 참조

주)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소칙58①3).

② 국외유학자격 인정서류(추가 서류)

구분	학 생		입증서류	발급처	
국외근무자	모든 학생		필요 없음		
국내근무자	고등학생이상		필요 없음		
	중학생이하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 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	해당 학교 등
		외국에서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국외유학인정서	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
위 이외의 사유로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외국에서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 중이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주)}	외교부		

주) 해당 자녀,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외국에서의 동거기간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재외국민등록등본이 없는 경우라면 출입국 사실로 확인이 가능함.

기재시 유의사항 - 교육비공제

- 1) 교육비공제대상자는 가족관계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능(연령요건 제한 없음)
- 2)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 등(연령 불문)의 교육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학증명서 제출
- 3) '국외교육기관'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학생이 취학전 아동이라 할지라도 국외 소재 학원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 불가

◆ 교육비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직계존속(예: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교육비 단,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② 타인(맞벌이부부의 배우자 포함)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 ③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금액
- ④ 국외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지출한 금액
- ⑤ 학습지를 이용하고 지출한 교육비
- ⑥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으로 지급한 교육비
- ⑦ 근로제공기간 이 외의 기간에 지출한 금액(입사전·퇴사후 지출액)

(6) 기부금공제 개정

1) 공제대상자 및 한도

기부금 유형	코드	기본공제대상자			이월공제 가능기간	공제한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및 초과분)	20	○	×	×	-	= 근로소득금액×100%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구(舊) 법정기부금)	10	○	○	○	10년	= (근로소득금액-㉠의 공제대상기부금)×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	×	×	-	= (근로소득금액-㉠의 공제대상기부금-㉡의 공제대상기부금)×30%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외) (구(舊)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40	○	○	○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주1)}×10% + Min[기준소득금액×20%,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주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 없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주1)}×30%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구(舊) 종교단체지정기부금)	41	○	○	○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 없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주1)}×30%

주1) 기준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의 공제대상기부금-㉡의 공제대상기부금-㉢의 공제대상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순서대로 합계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주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10%를 기본한도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기준소득금액의 20%를 기본한도에 더하기 전에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액과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때 비교대상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은 당해연도에 기부한 금액에 더하여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공제금액 개정안

기부금		세액공제금액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해당금액×100/110
	10만원 초과	한도 내 지출금액의 15%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5%)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 내 지출금액의 20%(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35%) ^{주)}
지정기부금		

주) 2021년 세법개정안(2021.09.02. 국회제출)에 따른 공제율

3) 제출서류

① 기부금영수증

코드	기부금명칭		관련영수증	발급처
10	법정 기부금	원칙	기부금영수증	해당 단체
		자원봉사용역	기부금확인서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위임 단체의 장 포함), 자원봉사센터장
20	정치자금기부금		정치자금영수증 (당비영수증, 정액영수증, 무정액영수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국회의원
4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우리사주조합
4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기부금영수증	해당 단체
41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영수증, 주무관청등록서류	해당 종교단체

가제서 유의사항 - 기부금공제

- 1)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부자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공제가능
- 2)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지출액은 공제불가
- 3) 기부금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제외)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
- 4) 대한적십자사 등 일부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5)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 ① 근로자 : 기부금명세서에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기부금공제신청
 - ※ 회사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노동조합비 등 기타 원천징수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② 회사 : 연말정산 시 기부금을 공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2021년 귀속분은 2022.3.10까지) 기부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전산 제출하여야 함

◆ 기부금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은 불문)가 아닌 기부금지출액
- ② 본인 이외의 정치자금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출액
- ③ 공제대상 법정기부단체가 아닌 경우
- ④ 기부금의 분류가 잘못되어 과다 공제된 경우
- ⑤ 미지급기부금
- ⑥ 이월공제 가능기간을 초과하여 소멸한 기부금이월액
- ⑦ 기부금 코드가 '50'으로 된 공제제외 기부금의 경우

(7)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

1) 공제요건

공제대상자	공제요건	공제금액	공제한도
① 연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원주 ¹⁾)인 근로자 또는 무주택 외국인근로자 ②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입자 ③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④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 : 제한없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주4)} 가 같을 것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의 10% ^{주2)} 또는 12% ^{주3)}	연 75만원 ^{주2)} 또는 연 90만원 ^{주3)} (월세액기준 750만원)

주1)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는 것이 없어야 함.

주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주3)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자 포함)

주4)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말함.

2) 제출서류

입증대상	구비서류	발급기관
월세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의 계약분 포함), 월세액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

가제시 유의사항 - 월세액공제

1) 공통사항

- ①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지출액 또는 상환액에 한하여 공제가능(계약명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이더라도 가능)
- ② 연말 현재 세대주(원)이어야 함(단,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다른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공제가능)
- ③ 주택 수 판단 :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까지 포함하여 주택 수 산정
 ※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④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1세대당 85㎡(수도권 이외 읍·면지역 100㎡)이하
- ⑤ 기준시가의 적용 : 기준일이 아닌 공시일을 기준 적용(공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은 그 직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2) 월세액공제

- ① '무주택 세대주(원)' 여부는 연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 중 무주택자이었다가 주택 1채 이상을 소유하여 연말 현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공제불가
- ② 공제대상 월세액은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한 월세액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말함

공제대상 월세액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2021년의 임차일수

◆ 월세액공제 불가한 경우의 예시

- 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②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
- ③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며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추가사항

(1) 종(전)근무지 명세

제출대상자	기재대상	제출 여부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자로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현)근무지에 제출한 자	① 종(전)근무지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② 종(전)급여총액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⑩계 또는 ⑪"란의 금액 기재 ③ 종(전)결정세액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⑫결정세액"란의 금액 기재 ⇒ 주(현)근무지에서 합산정산시 납부세액(㉓종(전)근무지)에 반영됨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제출 시 "○" 표시 - 미제출 시 "×" 표시

종(전)근무지의 연금보험료 등 추가반영사항

- 1) 비과세소득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란의 금액을 해당 코드별로 각각 구분 기재
- 2) 4대보험료(산재보험료 제외) 근로자부담금
 - ① 국민연금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연금보험료공제 ㉑국민연금보험료'란의 금액 기재
 - ※ '㉑국민연금보험료'란의 금액이 없으면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1쪽 좌측 하단란의 국민연금보험료 기재금액을 기재
 - ②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㉓보험료 ㉔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란의 금액 기재
 - ※ '㉔건강보험료'란의 금액이 없을 때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1쪽 좌측 하단란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재금액을 기재
 - ③ 고용보험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㉓보험료 ④고용보험료'란의 금액 기재
 - ※ '④고용보험료'란의 금액이 없을 때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1쪽 좌측 하단란의 고용보험료 기재금액을 기재